

#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시행 2020.10.13.][선거시행세칙 2020.10.13., 일부개정]

## 목차

제1장 총칙	1 ~ 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8 ~ 10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 15
제4장 선거운동본부	16 ~ 22
제5장 선거 일반	23 ~ 46
제6장 징계	47 ~ 58
제7장 투표	59 ~ 74
제8장 개표	75 ~ 85
제9장 당선	84 ~ 88
제10장 재투표 · 재선거	89 ~ 91
제11장 규칙	92 ~ 95
제12장 비상시 선거 시행	9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에 의한 선거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자주적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회의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세칙 및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세칙 및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협조)** 본회 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

하여야 하며,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와 본회 대표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준회원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조에 따라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③ 각 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거권이 인정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정회원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총대의원회의 대의원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동아리대표자

**제9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1. 학칙에 의하여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3. 원서등록 마감일까지 중앙운영위원, 상임위원,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 학과 정·부학생회장 및 본회 기구 임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자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당해연도 시행 선거를 기준으로 전년도 선거에서 제51조에 의한 징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2.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상임위원 전원은 당연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6. 각종 선거사고와 이의 신청에 관한 조사 및 심의
7.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부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의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8.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 및 재투표·재선거 실시 여부와 당선자 결정
9. 선거시행세칙의 개정 발의
10.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15조(의결정족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에 관한 의결은 따로 정한다.

## 제4장 선거운동본부

**제16조(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17조(구성)**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으로 한다.

**제18조(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본 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참모장)** ① 참모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참모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거운동본부와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세칙의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 수는 총 50명(후보자, 참모장 제외)으로 제한한다. 단, 선거운동원 수는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참모장연석회의)** ① 참모장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 참모장으로 구성된다.

② 참모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1. 집단선거운동 장소 및 시간
2. 정책토론회의 세부사항
3. 기타 참모장연석회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선거사무소)**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공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기구의 사무실
2. 대의원실
3. 학생회실
4.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③ 본회 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선거 일반

### 제1절 선거일정

**제23조(선거시기)** 선거는 임기 개시 전년도 11월 중에 시행한다.

**제24조(선거일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선거 공고,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후보자확정 공고,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등 선거 주요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후보자확정 공고 : 원서등록 최초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2. 선거운동 기간 : 원서등록 최초 마감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시작하며, 기간은 최소 7일로 선거일을 포함할 수 없다.
  3. 선거일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이전에 공고한다.
- ②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2절 선거인명부

**제25조(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총학생회 회원을 기재하는 명부를 말한다.

**제26조(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학교당국에 재학생명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당해 총대의원회 의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선거인명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당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선거인명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27조(기준)**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직전일 작성된 명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투표 방법을 병행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직전일까지 학생회원이 본인이 투표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 제3절 후보등록

**제29조(공동입후보)** 정후보자와 부후보자는 공동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30조(추천인서명)**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2개 단과대학 이상(각 학과의 추천인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의 회원 350명 이상의 추천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총대의원회의 대의원 30명 이상의 추천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등록 동아리 회장 20인 이상의 추천
- ② 추천인서명은 원서교부 이후부터 가능하며 원서교부 이전의 추천인서명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③ 추천인은 복수의 후보자에게 추천이 가능하다. 단,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은 불가하다.

**제31조(등록서류)**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서류를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 등록원서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한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원서
2. 자기소개서
3. 후보자 추천인 명단
4. 서약서
5. 선거운동원 및 참관인 명단
6.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 참관인 재적증명서 각 1부
7.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 참관인 학생회비 납입증명서(영수증) 각 1부
8.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 사퇴확인서(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에 한하여 제출한다)
9. 선거사무소 등록신청서

② 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후보자의 성명, 학과, 등록 학년, 사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공약

**제32조(등록심사)** ① 등록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확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등록서류를 심사한다.

③ 등록심사 결과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주고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통보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제3항에 따른 서류의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통보 24시간 이내에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33조(후보사퇴)** 정후보자·부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34조(등록기간 연장)** ①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 유고로 궐위 시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절 선거운동

**제35조(선거운동)** 본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운동본부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투표독려행위(단,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원칙)** ①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본 세칙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공약에 대한 평가 등은 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1. 총학생회 정·부회장
2. 총대의원장 정·부의장
3. 중앙선거관리위원
4.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
5. 당해 선거의 해당 기구의 장(정·부를 모두 포함한다)
6. 총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

**제38조(선전물)** ① 선전물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켓 30개 이내(규격은 70cm × 40cm 이내, 손잡이 막대 1m 이내)
2. 유인물 1종(규격, 색상 제한 없으며 참모장연석회의 제1차 회의 당일 제출한다) 및 수거함
3. 현수막 15개 이하(규격은 15m × 1.8m 이내)
4. 벽보 1종(규격은 A1 이하, 색상은 제한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기하여 참모장연석회의 제1차 회의 당일 제출한다)
5. 선거운동복 1종
6. 정책자료집 1종(규격은 A4 이하, 15페이지 이내이며 참모장연석회의 제1차 회의 당일 제출한다)
7. 목재게시판 20개 이내(규격은 2m × 1.5m 이내)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물품

**제39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개인유세
2. 합동유세
3. 정책토론회
4. 선전물의 게시·배포·설치
5. 선거운동복의 착용
6.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0조(합동유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유세에서 후보자는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선거운동본부 유세일시 24시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합동유세는 후보자 연설,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연설, 지지자 연설로 구성된다. 단, 합동유세의 구성은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합동유세 시작시간 5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합동유세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자리를 비워서는 아니 된다. 단, 휴식시간 동안은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은 30분으로 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순서에서 유세 장소에 한하여 악기와 음향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⑤ 합동유세 장소는 백마상 앞, 농업생명과학대학, 대덕캠퍼스 서북부지역, 민주광장, 보운캠퍼스에 한정한다. 단, 일정, 횟수,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정책토론회)** ① 정책선거로서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후보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책토론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견발표, 언론사의 질의응답, 자유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단, 정책토론

회의 구성은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정책토론회 시작시간 5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정책토론회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자리를 비워서는 아니 된다. 단, 휴식시간 동안은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⑤ 정책토론회는 민주광장, 한누리회관 소강당,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42조(금지사항)**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참모장,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중 집회를 주최하는 행위
2. 대중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사조직 또는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4.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그에 대한 선전
5.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행위
6.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 또는 유사행위
7.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43조(보고)**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 시작과 종료 시각
2. 선거운동 장소와 그 책임자
3.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정보

## 제5절 선거비용

**제44조(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금액 및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선거비용의 상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 최고 1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선거비용은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자격박탈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제46조(선거비용의 회계감사)**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일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집행 다음 날 1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자료는 세입세출계산서와 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명, 수량, 단가를 기입해야 한다)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기일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고 1회의 징계에 처한다.

④ 전체 선거비용 지출의 5%의 범위 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제18조 제7호에 의한 항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허용한다.

⑤ 제4항의 간이영수증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 1회의 징계에 처한다. 단,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장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제47조(징계)** 징계란 본 세칙에 징계 사유를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로 나뉜다.

② 주의가 3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③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49조(주의)** 공정한 선거 진행에 있어 제50조에 비해 경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주의 1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1. 규정된 선거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현수막과 목재계시판은 선거일 전까지 예외로 한다)
2. 유세시간 외에 악기나 음향기기를 사용한 경우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선거용품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중 집회를 열거나 참가하는 경우
4.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승낙 없이 들어가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7. 벽보·선전 선전물의 작성·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
8. 투표장 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통신·벽보·홍보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단,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의 정확한 결정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50조(경고)** 공정한 선거 진행에 있어 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경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1.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흥기 기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총대의원실 또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
3. 규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이나 간이영수증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대중 집회 또는 투표소·개표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5. 허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행위
6.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선거일 후 답례를 하는 행위

**제51조(자격박탈)** 피선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자격박탈로 규정한다.

1.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을 열거나 투표함 안의 투표용지를 확인·획득·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는 행위
3. 후보자·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4.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투표소·개표소·총대의원실 또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소란·교란 하거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선거인 명부·선거에 관한 서류와 인장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6.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의 모금 행위

**제52조(징계의 의결)**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은 재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징계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의결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제기)**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처분에 대해 통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유효기간)** 징계 처분은 개표 결과 공고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며, 기간 내에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6조(처벌)**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의 주의에 대해서는 익일 11시부터 14시까지 선거운동(기존에 배포된 유인물, 현수막, 목재계시판 등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유세,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선거운동복의 착용 등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금지한다.

③ 제50조의 경고에 대해서는 익일 11시부터 24시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④ 제51조에 해당하는 자격박탈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학교당국에 징계 건의한다.

⑤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은 적발 시점 이후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제57조(회원의 부정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이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공정 선거를 저해할 때 징계할 수 있다.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건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대표자의 부정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성원, 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및 본회 기구의 임원 등 본회의 대표자가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공정 선거를 저해할 때 징계할 수 있다.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건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장 투표

**제59조(선거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자가 직접 하되, 해당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로 한다.

**제60조(투표관리)** ① 투표관리관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포함한 투표진행요원은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1조(투표시간)** ①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투표율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1. 당일 연장투표 : 당일 20시 30분까지

2. 익일 연장투표 : 익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12시 투표율이 과반수에 도달하면 13시에 투표를 종료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8시 30분 전까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

의 확인 하에 투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투표가 중단되었을 경우 당일에 한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단, 중단된 시간이 30분이상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⑤ 투표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해당 투표구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제62조(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7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⑥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모장 및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투표진행요원·참관인 등 투표업무 관련자는 투표소에서 명찰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63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64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진행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진행요원 및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65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모바일학생증을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투표진행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진행요원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절취선을 절취하여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절취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7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후보자가 1개 조인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는 찬성·반대)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최대 두 명(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8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참관)**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비치한 자리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투표참관인이 자리이탈 및 불참하였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있다.

**제70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본 세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8시 20분까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8시 20분 전까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의 확인 하에 투표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관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3조(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④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운반참관인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수하며, 투표참관인은 이송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제74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장에 보관한다. 단, 개표장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참모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장 개표

**제75조(투표성립)**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76조(개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를 담당한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에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77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3시간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78조(개표장)** ① 개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 취업지원회관 1층 학생식당 또는 한누리회관 3층 소강당
2.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 : 총대의원실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총대의원실

② 개표장에는 개표진행요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개표진행요원·참관인과 취재·보도요원 등 개표업무 관련자는 개표장에서 명찰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79조(개표소)** 개표소는 개표진행요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개표절차)**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개표 선언
2. 각 투표구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봉투에 봉인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정을 투표구별로 반복
7. 제59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1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 한다.

**제82조(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8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84조(개표참관)**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5조(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 ① 중앙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장 당선

**제86조(당선의 기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에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②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일 때에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89조와 제90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제87조(당선 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 하였거나 개표 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제88조(임기개시)**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제10장 재투표·재선거

**제89조(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에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에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9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의 상실에 의하여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때
  5. 기타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재선거는 재선거 사유를 공고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럼에도 전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91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 의장단,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임기 중 궐위된 때 잔임기간이 240일이 넘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장 규칙

**제92조(발의)** 본 세칙의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발의
3.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

**제93조(의결)** 본 세칙의 개정안은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선거지침)** ①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참모장연석회의의 합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 본 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합의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장 비상시 선거시행

**제96조(비상시 선거시행)**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비상시라 함은 천재지변, 감염병 사태 등 본 세칙 규정된 사항만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1항에서 정의된 상황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참모장연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③ 단, 제12장의 상황을 준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상황을 학우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제정날짜 2020.10.13)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시행세칙 제3호, 2018.10.8., 전부개정]  
[2018.2.25., 일부개정]  
[2017.9.20., 일부개정]  
[2016.9.27., 일부개정]  
[2016.6.2., 일부개정]  
[2016.5.26., 일부개정]  
[선거시행세칙 제2호, 2015.10.2., 전부개정]  
[2012.10.4., 일부개정]  
[2012.9.27., 일부개정]  
[2020.10.3., 일부개정]

